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2010. 7. 19

개정 2012. 1. 17

1. 개요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은 원칙적으로 가격변동성(objective factors)을 기초로 적시(適時)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파생상품별 특성이나 시장상황 등의 제반 사정(subjective factors)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2. 가격변동성의 측정

가. (측정대상 가격) 증거금은 '기초자산의 가격·수치, 변동성 등이 일정한 수준으로 변동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순손실상당액' 이므로 파생상품별 '기초자산'의 가격 등으로 가격변동성을 측정한다.

나. (측정방법) 가격변동성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여 '2일간 가격 변동률 평균의 절대값($\bar{\mu}$)에 신뢰수준 3σ 의 값을 더한 수치로 한다.

$$\begin{aligned} \text{가격변동성} &= 2\text{일간 가격변동률의 평균의 절대값}(\bar{\mu}) + 3\sigma \\ &= \text{Max}(|\mu - 3\sigma| , |\mu + 3\sigma|) \end{aligned}$$

(1) 2일간 가격변동률은 정규분포를 전제로 한 분석을 위해 당일 기초자산 증가와 2일전 기초자산 증가의 변동률의 로그값으로 한다.

$$2\text{일간변동률} = \ln\left(\frac{PC_t}{PC_{t-2}}\right)$$

(2) 가격변동률은 위험노출기간이 2일인 점인 감안하여 '2일간 가격변동률'을 적용한다.

(3) 신뢰수준(confidence level)은 가격변동위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sigma(99.73\%)$ 을 적용한다.

다. (측정기간) 가격변동성 측정기간은 거래일 기준으로 20일 · 60일 · 120일 및 250일로 한다.

라. (측정주기) 가격변동성은 매거래일마다 측정한다(daily monitoring). 다만, 정기점검시 가격변동성 측정기준시점은 조정일 직전월 15일로 하며, 휴장일인 경우 순차적으로 앞당긴다.

3. 거래증거금률의 조정

가.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한 거래증거금률 조정

(1) (거래증거금률 인상) 가격변동성 상승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60일 가격변동성이 거래증거금률을 초과하는 경우에 거래증거금률을 인상한다. 다만, 60일 가격변동성과 거래증거금률간의 괴리가 큰 경우를 제외하고 60일 가격변동성의 상승에 불구하고 20일 가격변동성이 하락 추세에 있는 경우에는 인상을 유보한다.

(2) (거래증거금률 인하) ① 증거금률의 보수적 관리를 위해 60일, 120일 및 250일 변동성이 모두 거래증거금률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거래증거금률을 인하한다. 다만, 20일 · 60일 및 120일 가격변동성 중 가장 높은 가격변동성이 250일 가격변동성의 2분의 1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250일 가격변동성이 거래증거금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거래증거금률을 인하한다.

② 주가지수상품의 경우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한 가격급변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강하고 위험노출규모도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며 측정기간 1000일의 가격변동성을 거래증거금률 인하를 제한하는 최소 거래증거금률로 한다.

나. 주관적 요소를 감안한 거래증거금률 조정

- (1) (조정개요) 가격변동성을 기초로 한 거래증거금률 조정 수준은 과생상품별 특성이나 시장상황 등의 주관적 요소를 감안하여 변동될 수 있다.
- (2) (주관적 고려 요소) 증거금률 결정을 위한 주관적 요소로는 국내외 시장상황이나 제도개선 등에 따른 가격변동성에 대한 전망, 과생상품별 투자자 분포 및 거래유동성, 가격변동성의 분포특성 및 결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 ① (가격변동성 추이에 대한 전망) 가격변동성 추이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을 위해 일자별 가격변동성 추세를 분석하며, 과거 또는 현재 진행중인 시장충격의 규모나 영향력 등에 따라 시장충격의 잠재적인 지속가능성이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한다.
 - ② (가격변동성 분포)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시에는 측정된 가격변동성과 실제 변동성과의 차이가 확대되는 등 실제 가격변동성 분포가 정규분포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
 - ③ (결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증거금률 인상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인상 수준을 결정하고, 증거금률 인하시에도 가격변동성 급등 등 시장상황 악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하수준 및 시기를 조정한다.

다. 거래증거금률 조정폭

거래증거금률 조정시 최소 인상 또는 인하 수치는 금리선물의 경우 0.2%, 금리선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경우 0.5%로 한다. 다만, 거래증거금률 조정폭이 해당품목 거래증거금률의 30%이상이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폭을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다.

4. 위탁증거금률의 설정

- 가. (유지증거금률) 유지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같은 율로 한다.
- 나. (위탁증거금률) 위탁증거금률은 유지증거금률의 1.5배 수준으로 설정한다. 다만,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5. 증거금률 점검주기

- 가. (정기점검) 매분기 정기적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증거금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분기 첫 번째 월요일(당해일이 휴장일인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로 한다)을 조정일로 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최소 조정일 3 거래일전까지 조정내용을 회원사 등에 공지한다. 다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일 및 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나. (수시점검) 시장상황의 급변 등의 경우에는 그 때마다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증거금률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증거금률의 적용시기는 수시조정시에 결정한다.

6.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 운영

- 가. (심의회 운영) 파생상품시장 증거금률의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거금률 조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위원장 및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청산결제부서를 관장하는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로 하며, 파생상품시장본부 각 부서장을 심의위원으로 한다. 간사는 청산결제제도팀장으로 하며, 회의 자료의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증거금률 관련 대외공지

거래증거금률 및 위탁증거금률을 조정하는 경우 청산결제담당 부서장은 회원에게 지체 없이 변경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소 홈페이지 및 시장운영단말기 등을 통해서도 공지하여야 한다.